아파트 입주자

2023. 11.

# 화재 피난행동요령

## 아파트 입주자

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

BUSAN METROPOLITAN CITY FIRE & DISASTER HEADQUARTERS

# Contents


1 -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..... 3

2 - 화재 피난행동요령(인포그래픽) ..... 4

3 - 화재 피난행동요령(요약) ..... 5

4 - 적용 범위 ..... 6

5 - 대피 전략 ..... 6

6 - 화재피난 행동요령 ..... 7

7 - 피난가이드 활용 ..... 16

[참고1]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 가이드 ..... 17

[참고2]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..... 19

#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

| 구분 |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| |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상황 유형 | 대피가 가능한 경우 |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|

| | ❶ 대피 | ❷ 구조요청 | ❸ 대기 | ❹ 대피 또는 구조요청 |
|---|---|---|---|---|
| 행동 요령 |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. | | | |
| |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 | 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 |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. |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**대피가 가능한 경우**<br>- ❶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. |
| |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,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. |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,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. |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. |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**대피가 어려운 경우**<br>- ❷ 구조요청요령에 따라 행동한다. |
| |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. | 119로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. |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. | |

(비고) '다른 곳'이란,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임

# 화재 피난행동요령(인포그래픽)

## ▶▶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

1. 대피

- ☑ **화재 사실**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☑ 계단을 이용해 **낮은 자세로 지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**한다
- ☑ 대피 시 **출입문은 반드시 닫고,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**
- ☑ 비상벨을 누르고 **119에 신고**한다

## ▶▶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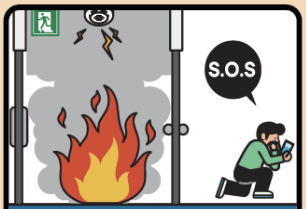


2. 구조요청

- ☑ **화재 사실**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☑ **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**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
- ☑ 대피공간 등이 **없는 경우** 화염 · 연기로부터 **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,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**
- ☑ 119로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**구조 요청**한다

## ▶▶ 다른 곳*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 ·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

3. 대기

- ☑ **화재 사실**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☑ 세대 내에서 **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**한다
- ☑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**창문을 닫는다**
- ☑ **119로 신고**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

## ▶▶ 다른 곳*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 ·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

4. 대피 또는 구조요청

- ☑ **화재 사실**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☑ 복도, 계단에 **화염 ·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**한 경우 **1.대피**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
- ☑ 복도, 계단에 **화염 ·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** 경우 **2.구조요청**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

*다른곳 : 아파트의 다른 세대,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

#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(요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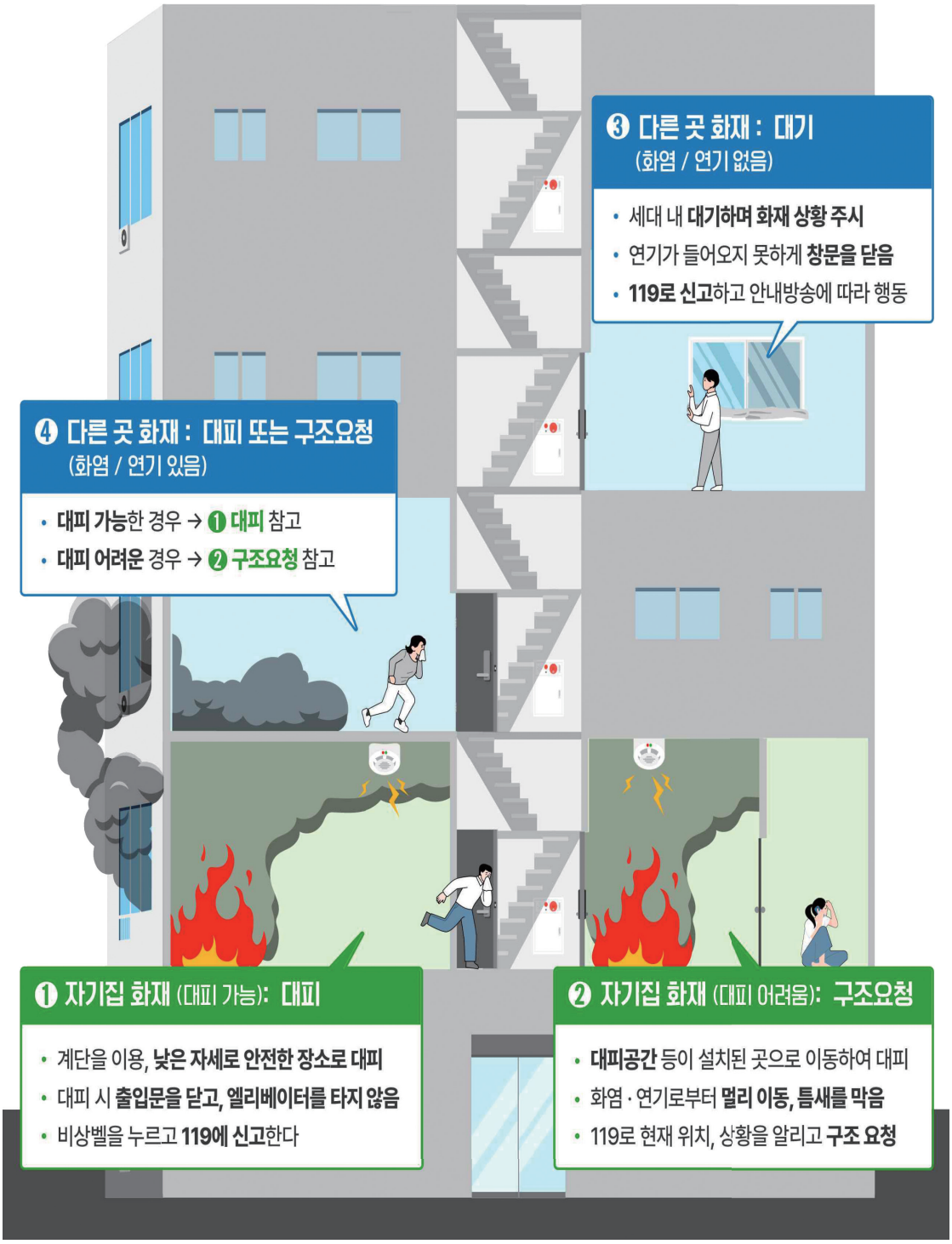

# 1 적용 범위

- 공동주택 중 아파트* 화재 시 입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에 대하여 적용

  *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(특정소방대상물)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(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됨)

# 2 대피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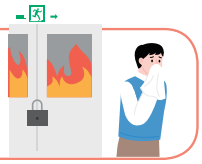

- 공동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는 경우, 공동주택(아파트) 구조·환경적 특성에 맞춘 피난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
- 일반적 대피절차는 화재위치(자기 집 vs 다른 곳)에 따른 유형별 화재상황(4가지)에 따라 행동요령 구성(대피, 구조요청, 대기 등)

**※가연성 외장재 시공 대상은 화재 시 건물 바깥으로 우선 대피토록 안내**

▶ 화재발생위치 및 상황에 따른 대피전략 ◀

| 대피절차 | 대피방법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| | 다른 곳*에서 화재발생 | |
| 1 상황유형 | 대피 가능<br>(현관) | 대피 불가<br>(현관) | 화염/연기<br>들어오지 않음 | 화염/연기<br>들어옴 |
| 2 행동요령 | 화재 전파(세대원) | | | |
| | ❶ 대피 | ❷ 구조요청 | ❸ 대기 | ❹ 대피 또는<br>구조요청 |

* '다른 곳'이란,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 공용부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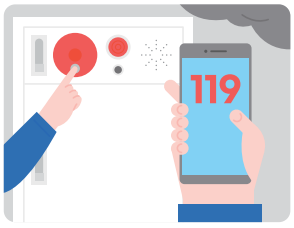

# 3 화재피난 행동요령

## 1 [상황유형] 화재상황 및 대피 여건을 판단한다.

###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기준

-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기준은 ▲화재발생장소(자기 집 vs 다른 곳), ▲피난여건(세대 밖으로 피난 가능여부), ▲화재확산상황(화염/연기의 유입 여부) 등을 종합 고려

▶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기준 ◀

|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| | 다른 곳*에서 화재발생 | |
|---|---|---|---|
| 대피가 가능한 경우 |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|
| ❶ 대피 | ❷ 구조요청 | ❸ 대기 | ❹ 대피 또는 구조요청 |

* '다른 곳'이란,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 공용부분임

**자기 집에서 화재발생**

**1-1.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: ❶ 대피**
**1-2. 현관 입구 등에서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: ❷ 구조요청**



###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

- **판단기준** ▶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발생위치 및 화염·연기의 확산여부 등을 고려해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
  -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 : 대피
  - 현관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: 구조요청
- **대피** ▶ 세대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선의 선택은 세대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으로 현관을 통해 지상층(또는 옥상층) 등으로 이동
- **구조요청** ▶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제한되는 상황(하단 참조)으로 세대원이 세대 내 고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

##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제한되는 상황(세대 내 고립되는 경우)

- 현관(인근)에 적치한 물건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어려운 경우
- 세대 내 발생한 화염·연기로 인해 현관문으로 접근이 불가한 상황

**화재 사례**

2019년 9월 광주시 소재 아파트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현관문이 막혀 50대 부부가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 발생

**다른 곳에서 화재발생**

**1-3.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: ❸ 대기**
**1-4.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: ❹ 대피 또는 구조요청**

##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

- **판단기준** ▶ 자기 집 외의 장소(다른 세대 또는 주차장 등 다른 장소)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확산 상황에 따라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대피
- **화염·연기 영향이 없는 경우** ▶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 상 대부분의 화재가 발화층 이내로 국한됨에 따라 무리하게 피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대기 가능

##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

- 공동주택 화재 시 대부분(98.2%) 발화지점 및 발화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 됨에 따라,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(1.4%)

▶ 연소확대 범위별 현황('19~'21년) ◀

(%)

| 구 분 | 발화지점만 연소 | 발화층만 연소 | 다수층 연소 | 발화건물 전체연소 | 인근 건물로 연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12,493건 | 1,210건 | 195건 | 23건 | 34건 |
| 점유율 | 89.5% | 8.7% | 1.4% | 0.2% | 0.2% |

※ 출처 : 국가화재정보시스템('19~'21년 통계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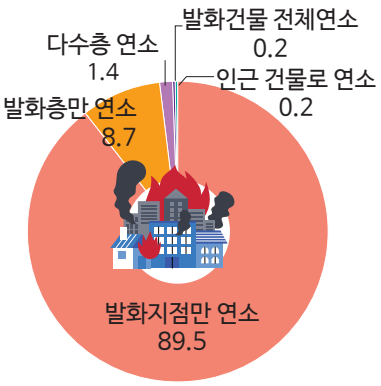

**화재 사례** (무리한 피난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)

'23.3.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10층 세대 내로 화염·연기 확산하지 않았으나,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

**화재아파트 입주민 인터뷰('23.3. 수원시 아파트 주민 인터뷰 결과)**

- 화재 시 항상 외부로 탈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연기로 인해 세대 내 안전한 곳에서 구출될 때까지 대기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(2층 거주자)
- 당시 고층은 세대 내에 머무르고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피해가 적었을 것임 (15층 거주자)

- **(화염·연기 영향이 있는 경우)** 화재의 특성상 아랫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윗세대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로서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임
  -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, 옆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세대로 전파되는 경우(특히,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피난 중 출입문을 개방함에 따라 급속한 연소 확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)에도 화염이나 연기의 영향 가능
  - 다만, 대피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신중한 대피가 필요하며 화재진압 과정에서도 상당수 인명피해가 초래되므로 진압보다 대피먼저

## 공동주택 인명피해 특성

-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서 39.1%, 화재 진압 중에서 18.1%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

▶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('19~'21년) ◀

| 대피 중 | | 구조 요청중 | | 화재 진압중 | | 화재현장 재진입 | | 행동 불가능 | | 비이성적 행동 | | 미상 | | 기타 행동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 사망 | 부상 |
| 49 | 604 | 1 | 187 | 6 | 297 | 0 | 6 | 45 | 66 | 5 | 28 | 83 | 135 | 6 | 152 |
| 39.1% | | 11.3% | | 18.1% | | 0.4% | | 6.6% | | 2.0% | | 13.1% | | 9.5% | |

※ 출처 : 화재통계연감('19~'21년 통계자료)

## 2 [행동요령]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·대기·구조요청 등을 한다.

**공통** **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.**

### 화재사실 전파

- 화재가 야간에 발생한 경우, 가족 구성원이 수면 중이나 주취 상태이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사실 전파 필요
- 또한, 피난약자(노인, 장애인 등)의 경우, 청력·시력 등의 장애(저하)로 인해 화재 인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난약자에 대해 별도의 화재사실 전파 요구

▶ 공동주택 사상 전 인적상태('18~'22년) ◀

| 수면중 | 음주상태 | 장애* | 약물복용상태 | 관리자 부재 |
|---|---|---|---|---|
| 589(20.8%) | 197(7.7%) | 152(5.4%) | 24(0.8%) | 8(0.2%) |

* 출처 : 국가화재정보시스템('18~'22년 통계자료)
주) 장애: 정신, 지체, 뇌병변, 청각, 신장, 시각, 언어, 발달장애 포함

수면중(20.8) 음주상태(7.7) 장애(5.4) 약물복용상태(0.8) 관리자 부재(0.2)

**자기 집에서 화재발생** **대피가 가능한 경우 : ❶ 대피**

###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
- 대피 시 세대 밖으로 나와 복도 및 계단을 경유하여 지상층(지상층으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는 옥상층)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

| 피난 시 출입문 확인요령 |
|---|
| - 출입문(손잡이)을 열기 전 손등으로 출입문이 뜨거운지 여부를 확인<br>- 만일 출입문이 뜨거울 경우, 반대편에 불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|

- 화재 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상층부의 유독가스로부터 보호

▶ 계단을 통한 대피유도 경로 ◀

세대 ▶ 복도 ▶ 계단* ▶ 지상층 옥상등 ▶ 집결 장소

*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경우, 가까운 계단 → 반대편 계단 순으로 대피유도

-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, 일반적으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,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계단을 이용하되, 해당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영향이 있는 경우, 반대편 계단으로 대피
- 다만, 복도식의 경우도 아래 그림의 경우처럼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피난 경로도 있으므로 평상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난경로 확인절차가 필요
- 복도,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경우, 반드시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할 수 있는지, 안전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판단

▶ 공동주택(아파트) 구조에 따른 대피경로 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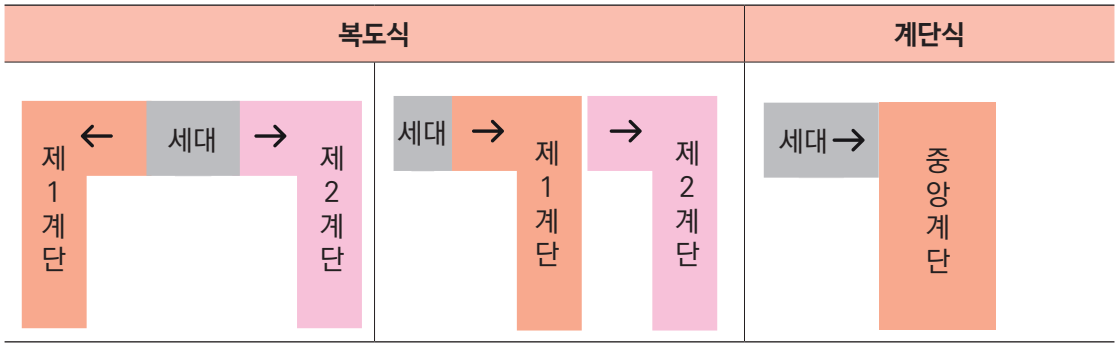


##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,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.

- 대피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되면 계단 등 수직통로를 통해 다량의 연기(유독가스) 등이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이동하므로 주의필요
-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뜨거워진 연기가 승강로를 상승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로 침투하여 질식을 유발하거나, 정전 등의 이유로 정지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힐 수 있어 위험(피난용승강기는 이용 가능)

**사고 사례**

- 2018. 1. 밀양 시 세종병원 화재 시 간호사 등 6명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두 사망
- 2022. 9.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3명 사망

## 비상용 vs 피난용 승강기

- **비상용승강기** ▶ 소방활동용으로 승강장에 창문·배연설비 등을 설치 소방활용에 용이하게 함
- **피난용승강기** ▶ 피난용으로 승강로에 배연설비·승강장에 제연설비 설치로 피난시 승강기로의 연기 침투를 차단하기 위함.

▶ 비상용 vs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◀

| 구분 | 비상용 승강기 | | 피난용승강기 |
|---|---|---|---|
| 근거 | 건축법 제64조제2항<br>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| | 건축법 제64조제3항<br>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|
| 설치 대상 | 일반건축물 | 공동주택 | 30층이상*<br>* 건축법 개정('18.4.17.)으로 30층이상 모든건물에 피난용 설치의무('18.10.18. 시행) 기존에는 준초고층 공동주택은 제외 |
| | 높이31m이상<br>(건축법개정 '92.6.1) | 16층 이상 → 10층이상<br>(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개정 '07.7.24.) | |

##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.

- 대피 과정에서 복도에 위치한 비상벨(발신기)을 눌러 화재사실을 전파(경보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외)
-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,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(또는 고립된 상황) 등을 알려주며, 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름

### 화재신고 예시 119

아파트 소재지 및 명칭 ▶ 화재 상황 ▶ 피해(사상자)여부 ▶ 상황요원 안내

· **위치** ▶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000아파트 00동 00호입니다.
· **상황** ▶ 현재 우리집 00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난 중입니다.
· **피해** ▶ 지금 000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숨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· **안내** ▶ 〈이후에는,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〉

##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대피가 어려운 경우 : ❷ 구조요청

### 피난설비(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)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

-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내 피난설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
- 대피공간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화염·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, 경량 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 가능(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)

▶ 아파트 세대내부 피난설비 ◀

대피공간(자기 집)

경량칸막이(옆 세대)

하향식피난구(아랫 세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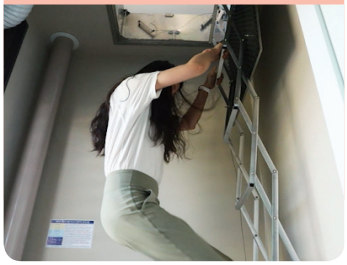

(비고) 1. "대피공간"이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㎡의 공간
2. "경량칸막이"란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화재시 쉽게 부수고 대피 가능
3. "하향식피난구"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 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

**피난 사례**

- 2016. 2.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7층 주방에서 화재발생 시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
- 2019. 9. 전남 광양시 44층 통로에서 화재 발생 시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

###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,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.

-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발코니로 이동하여 외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,
-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방 내부로 유입되는 연기(유독가스)를 막기 위해,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문 틈새를 막는다.

## 119로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.

-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,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(또는 고립된 상황) 등을 알려주며, 현재 고립된 장소 및 인원 등을 통보하여 이후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름

**화재신고 예시** 119

아파트 소재지 및 명칭 ▶ 화재 상황 ▶ 현재 위치 통보 ▶ 119 상황요원 안내

· **위치** ▶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000아파트 00동 00호입니다.
· **상황** ▶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, 현관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
· **구조** ▶ 지금 아파트 대피공간에서 가족 3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. 구조요청 바랍니다.
· **안내** ▶ 〈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〉

#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화염·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: ❸ 대기

##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.

-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세대 밖으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
- 세대 내 대기하는 경우라도 창문 등을 통해 화재확산 및 소방당국의 소화·구조활동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
- 향후, 화재가 확산하여 세대 내로 화염·연기가 유입되는 경우, 즉시 피난

**대피 또는 대기 결정**

▸ 화재 발생 시 최선의 선택은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임. 다만, 복도·계단이 연기(유독가스)로 오염되거나 피난약자(이동장애 등)의 경우는 무리한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가능(세대 내로 화염이나 연기 등의 직접적 유입이나 영향 등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, 세대 내 일시 대기)

▸ 특히, 아파트는 화재 통계 상 다수층으로 연소확대 비율이 매우 낮다(1.4%)는 점, 이에 반해 대부분(39.1%)의 인명피해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

▸ 나아가, 아파트는 구조 상 계단 등 수직경로를 통한 연기확산이 빠르고, 양방향 피난이 제한(계단식 아파트)되며 다수의 피난약자(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)가 거주하는 등 피난안전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

##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.

- 만일 창문 등이 열린 경우, 연기가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창문 등을 모두 닫는 등 안전조치 실시

##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.

- 아파트의 주소 및 명칭을 말하고, 현재 화재가 발생한 위치 및 화염·연기 등의 확산 상황을 알려주며 현재 세대 내 대기인원 및 장소 등도 통보
  - 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 및 안내방송 등에 따라 행동

**화재신고 예시** 119

아파트 소재지 및 명칭 ▶ 화재 상황 ▶ 대기인원 및 장소 ▶ 119 상황요원 안내

· **위치** ▶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000아파트 00동 00호입니다.
· **상황** ▶ 지금 0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집으로 화염, 연기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
· **대기** ▶ 현재 세대 내 발코니에 가족 3명 모두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.
· **안내** ▶ 〈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〉

#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화염·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: ❹ 대피 또는 구조요청

##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: 대피

-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
⇨ ❶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시 “대피” 설명자료 참조

##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: 구조요청

- 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
-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,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.
- 119에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.

⇨ ❷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시 “구조요청” 설명자료 참조

# 4 피난가이드 활용

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 작성 및 공유, 소방·피난시설 사용법 숙지

- **환경조사** ▶ 피난계획을 수립하기 전 우리 아파트의 피난환경 조사
  - 세대내 피난시설 : 대피공간, 완강기, 하향식피난구, 경량칸막이
  - 세대외 피난시설 : 피난계단, 옥상대피(출입문 개방) 등
- **대피계획** ▶ 가족 구성원 모두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, 세대별 평면도를 그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든 경로를 표시

| 1 상황유형 | | | 2 행동요령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자기집 | 대피 가능(현관) | → | 화재 전파 (세대) | → | ① **대피** |
| | 대피 불가(현관) | → | | → | ② **구조요청** |
| 다른곳 | 화염/연기 유입(×) | → | | → | ③ **대기** |
| | 화염/연기 유입(o) | → | | → | ④ **대피/구조요청** |

- **행동하기** ▶ 상황별 대피전략에 적합한 대피 행동요령 연습
  - 연 2회(상·하반기) 이상 가족이 참여한 대피연습 실시
  - 대피 시 출입문(현관, 출입문, 방화문) 닫고, 엘리베이터 타지 않음

**대피경로 작성(예시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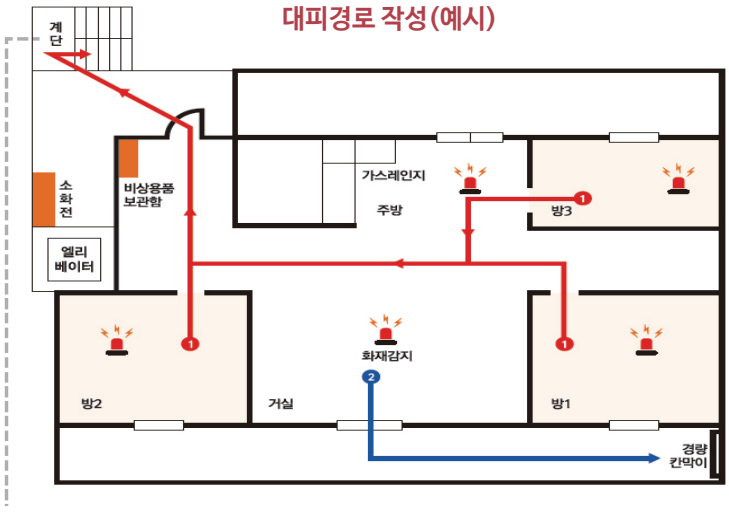


온 가족이 모여서 평면도를 간단하게 그린 후 대피방법을 표시해 봅니다.

- **캠페인** ▶ 입주민 대상 "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"

참고 1

#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 가이드

## 1 대피계획 수립하기

- 우리 아파트의 피난환경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환경을 조사한다.
- 화재 시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대피계획을 수립합니다.
- 대피계획 수립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참하고 계획을 공유합니다.
- 대피절차 이해, 대피경로 작성 및 소방·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합니다.

## 2 대피절차 이해하기

※ 화재 시 화재상황 유형별 적절한 대피 행동요령에 따릅니다.

| 1 상황유형 | | | 2 행동요령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자기집 | 대피 가능(현관) | → | 화재 전파 (세대) | → | ① **대피** |
| | 대피 불가(현관) | → | | → | ② **구조요청** |
| 다른곳 | 화염/연기 유입(×) | → | | → | ③ **대기** |
| | 화염/연기 유입(o) | → | | → | ④ **대피/구조요청** |

## 3 대피경로 작성하기

※ 세대별 평면도를 그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든 경로(출입문→복도→계단)를 표시합니다.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경우, 대피경로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.

대피경로 작성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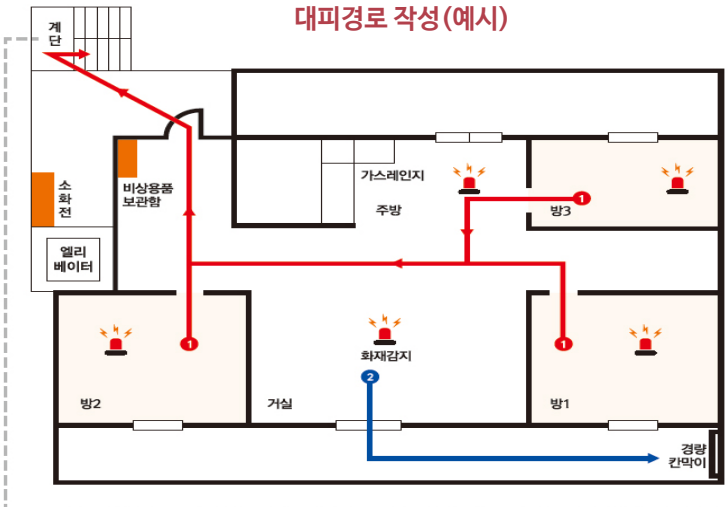


온 가족이 모여서 평면도를 간단하게 그린 후 대피방법을 표시해 봅니다.

⇨ 세대 내 피난설비(하향식피난구, 경량칸막이, 대피공간) 위치를 표기

## 4 소방·대피시설 이용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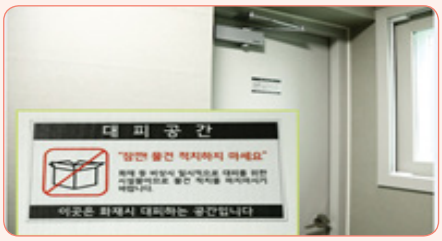


▶ **대피공간**

-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요청

*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

▶ **경량칸막이**

-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재 시 쉽게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

* 경량칸막이 앞 장애물 적치 금지

▶ **하향식 피난구**

- 발코니를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

* 하향식 피난구 덮개 개방 시 경보

▶ **옥상층 대피**

- 화재로 인해 지상층으로 피난 곤란한 경우 옥상층으로 대피

* 옥상문은 화재 시 자동개폐, 필요시 수동 스위치 조작

▶ **소방차 전용구역**

-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기

*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(100만원)

## 5 대피 연습하기

-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여 대피 연습을 연 2회 실시합니다.
- 다양한 피난 경로(지상층, 옥상층) 및 피난기구 사용법을 연습합니다.
- 대피 연습이 끝나면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개선할 점을 토의합니다.

참고 2

#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

| 구분 |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| |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상황 유형 | 대피가 가능한 경우 |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|

| | ❶ 대피 | ❷ 구조요청 | ❸ 대기 | ❹ 대피 또는 구조요청 |
|---|---|---|---|---|
| 행동 요령 |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. | | | |
| |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 | 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 |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. | **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**<br>-❶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. |
| |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,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. |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,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. |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. | **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**<br>-❷ 구조요청요령에 따라 행동한다. |
| |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. | 119로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. |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. | |

(비고) '다른 곳'이란,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임

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
BUSAN METROPOLITAN CITY FIRE & DISASTER HEADQUARTERS